

2016.03.31

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 및 시행일자

개정이유

-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확대 하고, 환전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·감독권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.
- 시행일자 : 2016. 03. 22 (화)

2. 주요 개정내용

- ① 은행,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 확대(제14조제4호)
- 지금까지는 은행,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외화채권의 매매,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, 앞으로는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.

2016.03.31

②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 · 감독권의 일원화

(제3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 · 제3항)

지금까지는 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그 밖의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총재가 관리 · 감독을 하였으나, 앞으로는 환전영업자를 통한 불법거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전업무 전반에 대한 등록 · 관리 · 감독권을 관세청장으로 일원화함.

③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(제40조제2호)

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**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**함으로써 자본거래 신고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함.